

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지급기준

심의구분 : 개정

제안부서 :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

제안사유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용어에 따라 변경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요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
<h3>기타수당 지급내규</h3> <p>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교외연구과제에서 지급하는 기타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전문가활용비 및 회의수당)</p> <p>① 국내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직급 및 경력사항</th> <th>강사료 (시간)</th> <th>자문료 및 회의수당 (시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책임급</td> <td>- 소속기관의 교수, 기관(부서)장 -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- 위와 상응하는 경력</td> <td>300,000원 이내</td> <td>200,000원 이내</td> </tr> <tr> <td>선임급</td> <td>- 책임급 이외</td> <td>200,000원 이내</td> <td>150,000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직급 및 경력사항	강사료 (시간)	자문료 및 회의수당 (시간)	책임급	- 소속기관의 교수, 기관(부서)장 -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- 위와 상응하는 경력	30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	선임급	- 책임급 이외	200,000원 이내	150,000원 이내	<h3>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지급기준</h3> <p>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교외연구과제에서 지급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전문가활용비)</p> <p>① 국내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직급 및 경력사항</th> <th>강사료 (시간)</th> <th>자문료 (시간)</th> <th>회의수당 및 토론수당 (1회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책임급</td> <td>- 소속기관의 교수, 기관(부서)장 -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- 위와 상응하는 경력</td> <td>300,000원 이내</td> <td>200,000원 이내</td> <td>200,000원 이내</td> </tr> <tr> <td>선임급</td> <td>- 책임급 이외</td> <td>200,000원 이내</td> <td>150,000원 이내</td> <td>200,000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회의 및 토론시간이 1회당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</p>	구분	직급 및 경력사항	강사료 (시간)	자문료 (시간)	회의수당 및 토론수당 (1회)	책임급	- 소속기관의 교수, 기관(부서)장 -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- 위와 상응하는 경력	30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	선임급	- 책임급 이외	200,000원 이내	15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	<p>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</p> <p>자문료와 회의수당을 구분하여 전문가활용비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</p>
구분	직급 및 경력사항	강사료 (시간)	자문료 및 회의수당 (시간)																										
책임급	- 소속기관의 교수, 기관(부서)장 -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- 위와 상응하는 경력	30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임급	- 책임급 이외	200,000원 이내	150,000원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직급 및 경력사항	강사료 (시간)	자문료 (시간)	회의수당 및 토론수당 (1회)																									
책임급	- 소속기관의 교수, 기관(부서)장 -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- 위와 상응하는 경력	30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
선임급	- 책임급 이외	200,000원 이내	15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4조(번역료 및 통역료 등)

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단가	비고
국문(자료, 일반) 원고	30,000원 이내	A4용지 1장(25행) 기준
외국어 원고	50,000원 이내	

제5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[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](#)을 준용한다.

부칙(2020. 2. 21)

본 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번역료 및 통역료 등)

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단가	비고
국문(자료, 일반) 원고	30,000원 이내	A4용지 1장(25행) 기준
외국어 원고	50,000원 이내	
PPT 작성	20,000원 이내	1장 기준(표지, 목차 등은 제외함)

제5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[국가연구개발혁신법](#)을 준용한다.

부칙(2020. 2. 21)

본 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1. 1)

본 개정 내규는 2022.1.1.부터 시행한다.

원고료 중 PPT 작성 단가
추가함